

제 4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

제4.1조 공표

1.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, 영어로, 자국의 관세 법,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.
2.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,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.
3.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사전에 공표하며,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.

제4.2조 상품의 반출

1. 양자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2. 제1항에 따라,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 - 가. 자국의 관세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
 - 나.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
 - 다.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, 그리고
 - 라. 상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즉시 관세, 조세 및 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한 최종 결정 이전에 수입자가 상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. 다만, 그 밖의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¹

제4.3조 자동화

¹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관세·조세 및 수수료의 지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담보·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각 당사국은, 가능한 한도 내에서,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,

- 가. 세관 이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.
- 나.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.
- 다. 국제무역 데이터의 양자 간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, 다른 쪽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.
그리고
- 라. 세계관세기구(이하 “WCO”라 한다)의 관세데이터모델과 WCO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른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자료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.

제4.4조 위험관리

각 당사국은 자국의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과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
제4.5조 협력

가능한 한도 내에서,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,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세관 기술과 절차들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 및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한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교환한다.

제4.6조 비밀유지

1.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,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. 모든 비밀유지의 위반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.
2.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, 행정 절차 또는 후속 항소 절차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될 수 있는 한도 외에,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정부의 명시적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아니 한다.

제4.7조 특송화물

각 당사국은 특송화물에 대하여 적절한 세관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, 그 무게 또는 과세가격과 무관하게,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 이러한 절차는

- 가.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한다.
- 나.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특송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.
- 다.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,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.
- 라. 가능한 한도 내에서,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.
- 마.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, 그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일정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송화물에 대해서는, 관세나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,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.²

제4.8조 재심 및 불복청구

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- 가.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행정적 재심³, 그리고
- 나.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

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그 당사국이 제4.6조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
제4.9조 별칙

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품목분류, 관세평가, 원산지국가 및 특혜관세 대우의 신청을 규율하는 것을 포함한 자국의 관세법, 규정 및 절차적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,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한 별칙의 부과를 허용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
² 이 호에도 불구하고,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화물 운송장이나 다른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당사국은 수입제한 상품에 대하여,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³ 한국의 경우, 이 호에 따른 행정적 재심은 대한민국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4.10조 사전심사

1. 각 당사국은,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다음의 사안에 대한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,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서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.⁴

가. 품목분류

나. 관세평가협정에 따른,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

다.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, 그리고

라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

2. 각 당사국은, 자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자국 관세 당국을 통하여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. 다만,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 사전심사서를 발급할 때, 그 당사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, 사전심사서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.

3.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, 사전심사서가 발급된 날, 또는 그 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서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.

4. 발급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

가. 그 심사가 사실 또는 법률의 오류에 근거하였을 경우(사람에 의한 오류 포함)

나.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할 경우

다. 이 협정과 일치하는 자국의 국내 법에 변경이 있을 경우, 또는

라. 그 심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을 경우

5. 발급 당사국은 심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만 사전심사 결과를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

6. 각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행정적 재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.

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수입자, 수출자,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.

7.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의 비밀유지 요건에 따라,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 결과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.

제4.11조 협의

1. 각 관세 당국은 이 장과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대 관세 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 그러한 협의는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.

2. 그러한 협의가 모든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실패할 경우,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4.12조에 언급된 관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4.12조 관세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 구성된 관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설립한다.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.

2. 위원회는 이 장과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이 장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.

3.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.

- 가. 이 장과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모니터링과 이행
- 나. 이 장과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효과적이고, 통일되며, 일관적인 해석을 위한 통일된 지침 수립
- 다. HS 전환에 기초한 부속서 3-가(품목별원산지규정)의 개정
- 라. 필요시, 이 장 또는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이행 과정에서 품목분류, 관세평가, 역내부가가치의 계산과 관련된 사안 및 양 당사국 간의 무역 원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그 밖의 관세사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, 그리고
- 마. 이 장과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의 개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를 도출할 것

4. 위원회는 매년,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, 양국 간 교대로 회합한다.